

# 비상용직 근로계약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을 “사업주”라고 하고 근로자 백순영 (주민등록번호 : 1100415246021) 을(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9월 12일까지(3개월)로 하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2. 근무 장소

근무 장소는 유에스 4층에 위치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한다. 단,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근무 장소의 변경에 동의한다.

## 3. 담당 업무

담당 업무(직종)는 패션라이브러리 운영보조으로 한다. 단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한다.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및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은 1시간으로 하며,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부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근무일

근무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출퇴근관리부에 의한다.

## 6. 임금

① 노임은 일급 78,720 원 (시급: 8,200 원)이며, 일급에는 주휴수당(13,120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근로 시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시급의 150%를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복지를 감안하여 월 근무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대체근무나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금은 해당 일용직의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퇴근관리부에 근거하여 근무한 익월 15일 이내 또는 고용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의 형태로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단, 결근자는 당일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휴일 및 휴가

①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매월 초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를 부여한다.

## 8. 비밀엄수

“근로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무조건 부담하고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즉시 손해를 이의없이 배상한다.

## 9.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되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17년 6 월 9 일

사업주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

근로자 :

백순영

백순영

# 비상용직 근로계약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을 “사업주”라고 하고 근로자 백순영 (주민등록번호 : 1100415246012)을(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2017년 9월 12일까지(3개월)로 하며,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 2. 근무 장소

근무 장소는 유에스 4층에 위치한 서울디자인재단으로 한다. 단, “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근무 장소의 변경에 동의한다.

## 3. 담당 업무

담당 업무(직종)는 패션라이브러리 운영보조으로 한다. 단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한다.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및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은 1시간으로 하며,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주”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부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근무일

근무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출퇴근관리부에 의한다.

## 6. 임금

① 노임은 일급 78,720 원 (시급: 8,200 원)이며, 일급에는 주휴수당(13,120 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근로 시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시급의 150%를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복지를 감안하여 월 근무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대체근무나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금은 해당 일용직의 담당직원이 확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퇴근관리부에 근거하여 근무한 익월 15일 이내 또는 고용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의 형태로 “근로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단, 결근자는 당일의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7. 휴일 및 휴가

①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

②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매월 초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만근 시)를 부여한다.

## 8. 비밀엄수

“근로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무조건 부담하고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즉시 손해를 이의없이 배상한다.

## 9.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되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17년 6월 9일

사업주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

근로자 : 백순영

백순영